

공고 제 2 호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10일

군내면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사항 직권 조치일자
김 *우	김 *우 1971-04-16	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서부해안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11-10